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43호
- 나. 제출자 : 정순기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안 제8조)

마.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안 제11조)

4.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를 구체화한 것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한 우리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고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명시된 해당 사업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사업 및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최우선 고려와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리구는 금년 1월말 기준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32.92%로 서울시 평균 30.81%보다 높고 자치구에서 7위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청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청년 예술인들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 청년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

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3.07.20 조례 제1342호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금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